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등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案番號	316

提出年月日 : 1993. 11. .
提 出 者 : 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屋外廣告物등管理法 施行令 改正·公布 ('93. 2. 24 施行)에 따른 後續措置를 履行하고 또한 그 동안 條例施行過程에서 나타난 일부未備點 및 不合理한 점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工業地域안의 屋上看板도 看板間의 水平거리 規定에 追加토록 함 (案 第5條 第3項)

나. 高速國道 主要警戒施設의 遮蔽用看板 規格 設定權을 區廳長에게 權限委任토록 함 (案 第 19條 別表5)

다. 애드벌룬 (固定式)과 플래카드의 許可·申告 手數料規定을 削除토록 함 (案 第17條 [別表 2])

라. 都市步行者 案內標識板을 公共施設物로 規定토록 함 (案 第6條)

마. 民間團體所屬 安全度檢査 賣買에 對한 市長名義의 身分證을 交付할 수 있도록 함 (案 第11條 第6項)

바. 市長은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計劃을 每年 3月末까지 樹立.公告토록 함 (案 第14條 第2項)

사. 屋外廣告物 從事者에 대한 敎育을 委託받은 자는 當該年度 敎育計劃을 樹立 2月末까지 市長에게 提出토록 함 (案 第15條 第5項)

아. 突出看板中 理·美容業所 標識登의 申告 手數料를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引下토록 함 (案 第17條 [別表2])

3. 參考事項(關聯 法)

屋外廣告物등管理法, 同法施行令

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

대전직할시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옥외공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중 “상업지역안의”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로 한다.

제6조 제1호중 “지정벽보판”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삽입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중 “매년 2월말까지”를 “매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제5항중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한다.

[별표 2] 옥외공고물등의 표시 허가·신고수수료 중 “3. 돌출간판”란과 “7. 애드벌룬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14.플래카드란”을 삭제한다

3. 돌출간판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20,000 28,000 5,000
7.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 ○ 옥상에 표기하는 것	20,000 30,000

[별표 5] 권한위임사항중 “8란” 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간판 규격의 설정		○	영제 19조 제7항 제 20조 제1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②(생략) ③ 영제19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는 상업지역안의 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②(현행과 같음) ③ -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 - .
제6조(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영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버스,택시승강장,노선버스안내표지판.휴지통.벤취.관광안내소 지정벽보판 2. (생 략)	제6조(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 . 1. -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2. (현행과 같음)
제1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⑤ (생략) <신 설>	제11조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①~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육) ① (생 략) ② 영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⑤ (생 략)	제14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 -------매년 3월말까지 -- ---------------- ---------------- 1. ~ 3.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15조 (교육의 위탁) ①~④ (생 략)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15조 (교육의 위탁) ①~④ (현행과 같음) ⑤ ---------------- ------------ 2월말까지 -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기 정 안

(별표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17조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원)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			
가. 건물전면 간판	개	· 5제곱미터 이하	3,000
		· 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
나. 건물측면 4층 이상(영 제15조제4호)	개	· 20제곱미터 이하	40,000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2. 세로형 간판	개		3,000
3. 돌출 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	28,000
4. 공연 간판	개		5,000
5. 옥상간판	개	· 70제곱미터 이하	320,000
		· 7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6. 지주이용 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20,000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
7. 애드벌룬	개	· 공중에 띄우는 것	20,000
		· 지상에 표시하는 것	20,000
		· 옥상에 표시하는 것	30,000
8.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1,000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
나. 전주, 가로등주	개	· 50개 이하	11,000
		· 50개 초과시 50개당 가산	11,000
9. 교통시설(지하도)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13,000
		· 5제곱미터 초과	15,000
10.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바닥선	대		400,000
나. 차량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현수막	개		5,000
14. 플래카드	개		5,000
15. 벽 보	매	100매당	6,000
16. 전 단	매	1,000매당	3,000
17. 창문이용 광고물	개	1문당	2,000
18.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구분 /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 간판	(현행과 같음)		
2. 세로형 간판	(현행과 같음)		
3. 돌출간판		. 3.5 제곱미터 이하	20,000
		. 3.5제곱미터 초과	28,000
		. 이.미용업소 표지등	5,000
4. 공연간판	(현행과 같음)		
5. 옥상간판	(현행과 같음)		
6. 지주이용간판	(현행과 같음)		
7. 애드벌룬		.공중에 띄우는것	20,000
		.옥상에 표시하는것	30,000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현행과 같음)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광고물	(현행과 같음)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현행과 같음)		
11. 선전탑	(현행과 같음)		
12. 아취광고물	(현행과 같음)		
13. 현수막	(현행과 같음)		
(삭 제)			
15. 벽 보	(현행과 같음)		
16. 전 단	(현행과 같음)		
17. 창문이용광고물	(현행과 같음)		
18.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 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현행과 같음)		

현 행

(별표5) 권 한 위 임 사 항 (제19조 관련)

NO.	위 임 사 무 명	처리 직할시장	처리 구청장	근 거 법 령
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단, 직할시의 경우 공공시설을 이용 광고물 제외)		○	법 제3조 영 제4조 내지 제7조
2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9조
4	광고물등의 금지지역·장소지정	○		법 제4조 영 제10조
5	허가 및 신고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3조 영 제6조
6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지역·장소·물건에 표시할 광고물의 협의	○		법 제8조 법 제2조
7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		영 제12조
8	굴사시설 차폐를 간판규격의 설정		○	영 제20조 제1항
9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지정	○		영 제26조
10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한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		영 제32조
11	광고물등의 안전도 점사에 관한 사항		○	법 제9조 영 제39조
12	안전도 점사업무의 위탁		○	영 제40조
13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법 제10조
14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	법 제11조 영 제41조
15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		법 제12조 제1항 영 제42조
16	교육의 위탁	○		법 제12조 제3항 영 제43조
17	옥외광고물등의 허가표시의 취소		○	법 제13조 법 제14조
18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	영 제44조 및 제45조
19	허가·신고·안전도점사·옥외광고업의 신고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법 제17조
20	과태료의 부과징수		○	법 제20조

개 정 안

NO.	위 임 사 무 명	처리 직할시장	처리 구청장	근거법령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굴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간판 규격의 설정		○	영제19조제7항 영제20조제1항
9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현행과 같음)			
17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19	(현행과 같음)			
20	(현행과 같음)			

屋外廣告物등管理法

第11條의2 (韓國廣告事業協會의 設立등) ①屋外廣告物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屋外廣告業의 건전한 발전 및 從事者의 品位向上을 위하며 韓國廣告事業協會(이하"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屋外廣告物등의 관리에 관한 調査·硏究
2. 屋外廣告物등의 安全度檢査 및 屋外廣告業 從事者에 대한 敎育등 市·道知事가 委託하는 業務
3. 그밖에 定款이 정하는 사항

④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第11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의 申告를 한 者
2. 기타 定款이 정하는 者

⑤協會의 定款記載事項, 任員의 數·任期·選任方法,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2·12·8〕

第16條 (權限의 委任) 市·道知事는 당해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市長 ·郡守 또는 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에게 委任할 수 있다.

屋外廣告物등管理法施行令

제19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⑤ 간판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3·2·24>

1. 간판은 옥상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에서는 간판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 내지 50미터이상으로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자기의 업소가 입주하여 상품선전이 아닌 자기업소의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과 공업지역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은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간판간의 수평거리 산정에 있어서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10미터를, 간판의 1면의 면적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수 없다. 다만, 인위적 또는 자연적 차폐가 불가능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사시설의 차폐용 간판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 간판의 규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3·2·24>

제43조 (교육의 위탁) ①시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교육실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교육의 실시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등 교육의 위탁에 관한사항과 교육실시방법·수강절차·교육비용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大田直轄市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査　　報　　告

1993. 12. 15
産業建設委員會

1. 審査經過

가. 提出日字 및 提出者 : 1993. 10. 27.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3. 11. 1

다. 上　程　　日　字 : 第28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
第8次 産業建設委員會 (1993. 12. 15) 上程
質疑, 審査, 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 都市計劃局長　李 秉 讚)

가. 提案理由

屋外廣告物등 管理法 施行令 改正・公布('93.2.24 施行)에 따른 後續措置를 履行하고 또한 그동안 條例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 및 不合理한 事項을 改善・補完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가) 工業地域안의 屋上看板도 看板間의 水平거리 規定에 追加함.(案 第5條 第3項)

(나) 高速國道 主要警戒施設의 遮蔽用看板 規格 設定權을 區廳長에게權限委任함. (案 第19條 別表5)

(다) 애드벌룬(固定式)과 플래카드의 許可・申告 手數料 規定을 削除함. (案 第17條 別表2)

(라) 都市步行者 案內標識板을 公共施設物로 規定함. (案 第6條)

(마) 民間團體所屬 安全度檢査 要員에 대한 市長 名義의 身分證을 交付할수 있도록 함. (案 第11條 第6項)

(바) 市長은 屋外廣告物 從事者에 대한 敎育 計劃 樹立・公告를 每年3月末까지로 함. (案 第14條 第2項)

(사) 屋外廣告物 從事者에 대한 敎育을 委託받은 者는 當該年度 敎育計劃을 樹立 市長에게 2月末까지 提出토록 함. (案 第15條 第5項)

(아) 突出看板中 理・美容業所 標識燈의 申告 手數料를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함. (案 第17條 別表2)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 金 完 圭)

가.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 앞의 內容과 같음.

나. 檢討意見

○ 이 條例는 1993. 2. 24. 屋外廣告物等 管理法 施行令이 改正되어一部 條項을 改正하는 事項과 一部 不合理한 점을 改善·補完하기 위하여 改正코자 하는 事項임

○ 主要 改正 內容을 보면, 商業地域안에서 看板間의 水平距離를 50m 以上으로 한 內容에 工業地域의 追加, 廣告物을 表示할 수 있는 公共施設物에 都市 步行者 案內板 追加, 安全度 檢查業務委託時 受託者에게 身分證을 發給할 수 있도록 한 內容을 新設하였으며,

○ 屋外廣告物 從事者에 대한 敎育 計劃 樹立期間을 2月末에서 3月末로 敎育 受託者의 敎育計劃 樹立期間을 1月末에서 2月末로 各各 延長하고, 一部 廣告物 表示 許可·申告 手數料 納付基準 改正과 區廳長에게 委任하는 內容 一部를 改正한 事項임.

○ 敎育計劃 樹立期間을 1個月씩 延長한 것은 年初 業務輻輳의 解消方案으로 判斷되며, 手數料 納付 內容中 理·美容業所 表示燈은小規模 申告對象 突出廣告物로 分類되어 申告 手數料를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下向調整한 것으로 判斷되나, 其他 突出看板表示 申告手數料와 衡平性의 問題가 있을 것으로 思料됨.

4. 質疑 및 答辯要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전도 검사요원 신분증 발급상황의 구체적 설명과 소규모 돌출간판에 대한 신고 수수료를 하향 조정하는데에 대한 상대적 민원발생 소지는	○ 안전도 검사를 공무원이 해왔으나 광고물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요원에 대한 신분증 발급이며 이·미용업소 표시등에 대한 돌출 간판만 20,000원에서 5,000원으로 하향조정한 사항은 이·미용업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내용임.
○ 대형광고물등의 신고·허가 수수료는	○ 광고물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수수료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5. 討 論 要 旨

없 음

6. 小委員會 審査內容

없 음

7. 少數 意見의 要旨

없 음

8. 審 査 結 果

原 案 可 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